휴가나눔제도 운영지침

제정 2025. 8. 1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휴가나눔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보상휴가 :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직원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으로 지 급하는 휴가
 - 2. 저축휴가 :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직원이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발생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저축한 휴가
 - 3. 기부휴가 : 휴가나눔제도를 통하여 부여받은 휴가

제2장 휴가 기부 절차 및 방법

- 제3조(수혜 대상 및 기간) ①수혜 대상 직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 등의 질병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직원
 - 2. 해당연도 연차휴가, 보상휴가, 저축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복무규정 제24조에서 정하는 병가 기간을 최대 사용한 이후에도 정상 근무가 곤란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직원
 - ②수혜 가능 기간은 진단서상 요양이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하며 근 무일 기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4조(수혜 신청) ①휴가를 기부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1(휴가 수혜 신청서) 및 진단서 등 수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담 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수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로 한다. 단, 진단서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3(종합병원) 이상의 진단서에 한한다.
 - ②수혜 신청은 동일한 질병 또는 장해당 1회에 한한다.
 - ③별지 1의 모집일수는 수혜 가능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5조(수혜 결정) 수혜 대상 직원에 대한 심사 및 수혜 여부 결정, 휴 가 기부 모집일수 등은 제3조. 제4조의 기준으로 정한다.

- 제6조(휴가 기부) ①휴가를 기부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2(휴가 기부 서약서)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보상휴가 및 저축휴가 에 한해 일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.
 - ②1인당 최대 기부휴가 일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 - ③휴가 기부는 근무일 기준 5일 동안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모집된 휴가 일수만을 신청자에게 기부휴가로 제공한다. 단, 공고된 기부휴가 일수만큼 모집된 경우에는 조기 마감한다.

제3장 기부휴가 사용 및 사후관리

- 제7조(기부휴가 사용) ①수혜직원은 본인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, 보 상휴가, 저축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복무규정 제24조에서 정하는 병 가 기간을 최대 사용한 이후에 부여받은 기부휴가를 사용할 수 있 다
 - ②수혜직원은 본인의 사용가능한 연차휴가, 보상휴가, 저축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복무규정 제24조에서 정하는 병가 기간을 전부 사용 한 이후 진단서상 요양이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기부휴가를 연이어 사용해야 한다.
- 제8조(잔여 기부휴가 관리) 퇴직 또는 질병 완치(질병 완치의 기준은 진단서상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인 의사로 정상 근

무를 희망하는 경우) 등으로 미사용된 기부휴가는 소멸되며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질병휴직 사용 등) 수혜직원은 기부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정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휴가 수혜 신청서

	신	청	ス	ŀ

소속부서	사	번	
직 급	성	명	

□ 신청내용

모집일수	일
신청사유 (병명 및 세부 내용)	

*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등 증빙서류 별첨

- 1. 본인은 기부받은 휴가를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며, 기부받는 휴가에 대하여 금전 지급 제안을 하지 아니하겠음. □
- 2. 본인은 퇴직 또는 질병 완치 등으로 수혜자격이 종료되거나 기부받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미사용 잔여 기부휴가가 소멸됨에 동의하며, 이에 대한 임금 및 휴가 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겠음. □
- 3. 본인은 상기 휴가나눔 신청과 관련하여, 향후 어떠한 민·형사·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. □

본인은 상기 내용에 따라 휴가를 기부받아 사용하기를 희망하며, 휴가 모집 및 기부 과정에서 기명으로 본인의 질병 및 병력 정보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전 직원에게 공지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(별지 2)

휴가 기부 서약서

□ 기부내용

소속부서		사 번		
직 급		성 명		
기부휴가 일수	보상휴가 00 (일)/저축휴가 00 (일)			

- 1. 본인은 휴가 기부에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였으며, 기부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(단, 휴가 모집 결과에 따라 기부휴가가 조정·반려될수 있음). □
- 2. 본인은 기부한 휴가에 대한 임금 및 휴가청구권 등 귀속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, 기부 한 휴가의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공사에 있음. □
- 3. 본인은 상기 휴가 기부와 관련하여, 향후 어떠한 민·형사·행정상의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하겠음. □

본인은 상기 내용에 따라 익명으로 보상휴가 __일 및 저축연차 __일을 수혜 직원에게 기부함에 있어.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